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과태료 감경규정은 부과된 과태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도 하는 정상참작 규정임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체납위반행위자의 경우에도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

이는 감경규정 취지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(“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”,의결: 2021.2.22.)가 있어 이를 현행법에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과태료를 감경할 때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 신설(별표 11 제1호다목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민권익위원회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1 제1호다목 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	
연 락 처	(032) 835 - 2351